

		시 민	
문서번호	안전관리과-8218	주무관	안전관리과장
결재일자	2017.9.29.	시설국장	도시기반시설본부장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홍민철	장종환
방침번호		류훈	09/29 고인석
		협 조	도시철도국장 주무관 주무관 전문관
			형태경 윤원섭 정달영 박철호

I • SAFETY • U

**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
추진계획 보고**

2017. 9

**도시기반시설본부
(안전관리과)**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전 문 가 자 문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사 회 적 약 배 자 려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성 별 분 리 통 계	●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인적통계 남·여 구분, 수혜집단의 남·여 구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일 자 리	●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직·간접 채용, 취업알선, 전문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 보	●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 책 영 문 화	●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영문 제목·요약, 해외 언론 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바 른 우 리 말	● 불필요한 외국어·와이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 을 사용하였습니까? 예) 스페이스 플랜, 앵커시설, 거버넌스, 인큐베이팅, 매칭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결 재 문 서 공 개	● 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지 속 가 능 성	●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의 보전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
벌점부과 방법개선 및

안전관리 특별 추진계획 보고

벌점위원회는 잦은 개최로 인한 안전의식 결여와 현장관계자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어 부실벌점 부과 방법을 개선하고, 안전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해 안전점검 특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

1 추진 개요

추진근거

-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(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)
-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(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)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(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)
-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(안전관리)

추진내용

- 벌점부과 방법 개선
-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공종 수행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현장 관리자는 정위치 근무
- 안전관리가 미흡 현장은 중점점검 시행
- 음주 근로자에 대한 현장 자율적 관리방안 수립 및 시행

2 **벌점부과 방법개선**

20대 항목 위반시 공사부서에서 1회 경고와 2회 엄중경고 후 3회 적발시 벌점위원회에 상정 벌점을 부과토록 벌점부과 방법 개선

현황(2016~2017년 벌점부과 현황)

항목	상정건수	벌점	경고	시정	비고
2016년	29	7(10)	18(15)	4	()은 이의신청 전, 8회 개최
2017년(상반기)	20	6	10	4	6회 개최
합계	49	13	28	8	

문제점

- 공사부서 담당자들의 안전의식 결여
 - 안전은 안전관리과에서 전담한다는 의식이 저변에 확산되어 있음
- 벌점위원회의 잦은 개최로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함
 - 경고, 재경고, 시정 등 벌점 부과 비율이 낮은 수준임(26.5%)
 - 벌점위원회의 잦은 개최로 인한 소명 등 현장 피로도 증가

시행방안

- 근로자안전 10대항목, 안전시공 10대항목에 한해 벌점 부과
- 20대항목 위반시 해당 부서장이 현장에 경고 등 자체 시행
- 3회 적발시 벌점위원회 상정하여 벌점 부과
 -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안전활동(모범사례) 전개시 1회 경감 조치
 - 누적 건수는 1년 단위(1월1일~12월31일)로 계상
- 품질관련 심각한 문제 발생 우려시 벌점위원회 직권 상정

기대효과

- 부서장 주관 경고 시행으로 공사부서와 현장간 안전의식 강화
- 잦은 벌점위원회 개최로 인한 현장의 해명자료 작성 등의 업무 저감

3 관리감독 공백시간 관리 방안

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공종 수행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현장관리자가 정위치에 근무함으로써 관리감독의 공백 예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근로자 작업개시 시간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현장관리자의 출근시간이 상이하여 관리감독 공백 발생
 - 위험작업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현장관리자가 반드시 사전입회 하여야 함에도 출퇴근이 상이하여 관리감독 부재로 재해발생 위험성 증가
-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조회 참석 필요
 - 시공사 주관 안전조회 및 안전미팅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위험발생 공종(5RP)에 대한 소통 필요

□ 시행방안

- 위험공종 작업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현장관리자 정위치 근무
 - 추락, 낙하, 발파, 중량물 취급, 화재, 감전, 밀폐 등 위험작업
 -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
 -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위험공종 작업
- 작업개시전 위험공종 작업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현장관리자 입회 여부는 공사부서 점검하고, 안전관리과에서 불시 점검시행
 - 조기 출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유연근무 시행

□ 기대효과

- 위험공종 작업에 대한 현장관리자의 불안전요인 사전 파악 및 제거
- 위험공종 작업에 대한 근로자 인지능력 향상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가능

4 안전관리 미흡 현장 직권조치 및 수시점검 시행

안전점검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예상됨에도 즉시 시정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 등이 지속될 경우 점검 중 직권 조치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불안전 상태 공종을 적출하였음에도 조치지연으로 재해발생 가능성 증대
 - 안전점검 처리결과 기한(7일)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존치
- 현장 안전관리 미흡 및 안전의식 저하 발생
 - 매월 1회 점검으로 다음 점검시까지 공백기간 동안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의식도 결여됨

□ 시행방안

- 안전관리 미흡 현장에 대한 중점관리 필요시 추가 불시 점검 시행
- 안전점검시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사항 적발시 안전점검자에게 우선 조치 권한 부여
 - 시공사의 공정 및 작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치

□ 기대효과

- 불안정한 상태 즉시 조치로 재해발생 가능성 최소화
- 안전점검을 추가 시행하여 상시 안전관리 및 공사관계자 안전의식 강화
- 안전관리 미흡 현장 중점관리로 건설안전 수준 상향

5 음주 근로자 관리방안

불안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음주 근로자에 대해 **현장 자율적**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재해발생 예방

현황 및 문제점

- 음주상태는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하여 재해발생 가능성 증가
 - 전날 밤 늦게까지 음주 후 위험공종 투입근로자 사고 빈도 증가
- 근로자에 대한 음주측정 및 작업투입 배제시 분쟁발생 소지가 있음

시행방안

- 음주 근로자 적발시 현장대리인 직권으로 작업 투입배제 및 휴식 후 투입 등 자율적으로 시행
-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한 근로자와 현장에서 식사중 음주자는 원칙적으로 작업배제
 - 음주상태 확인시간 : 오전 안전조회 및 점심심사 후 시행
 - 음주측정 확인대장 작성

※ 음주운전 처벌기준(참고)

혈중알콜농도	음주운전 처벌기준	비 고
0.2%이상	1~3년이하 징역 /500만원~1000만원 이하 벌금	
0.1~0.2%	6개월~1년이하 징역 /300만원~500만원 이하 벌금	
0.05~0.1%	6개월 이하 징역 /300만원 이하 벌금	

기대효과

- 불안정한 행동을 하는 근로자 작업통제로 재해발생 최소화
- 자발적인 현장관리로 안전관리 자율성 증대

6 행정 사항

공사부서

- 20대항목 위반시 부서장이 현장에 경고 조치
 - 위반내용은 안전관리과에서 사업부서에 통보
- 위험공종 작업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현장관리자 입회여부 점검
 -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유연근무 시행

안전관리과

- 현장별 20대항목 위반사례 통계 관리
- 위험공종 작업 예정현장 불시점검
- 안전관리 미흡현장 수시 점검(월 2회 이상). 끝.